

#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2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임미애 · 윤준병  
이개호 · 황명선 · 전종덕  
김현정 · 이원택 · 안태준  
문대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, 크기, 구조,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,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‘국내 운항에 한함’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.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.

이에 항해구역, 승선정원,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(안 제16조제5항 신설).



## 수상레이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레이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이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는 운항구역·승선정원·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해선 안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6조(안전검사증 ·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안전검사증 ·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는 운항구역 · 승선정원 ·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해선 안된다.</u></p>